

## 2.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법률 제5,525호 1998. 2. 24.

###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다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의 운용시기를 2002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18조의3, 법률 제5418호 부칙 제1조 및 제8조의2).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제18조의3제3항”을 “제1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법률 제5418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부칙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급이자 손금부개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이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 - 부 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